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9

발의연월일: 2021. 4. 13.

발 의 자:김정호·김병욱·김윤덕

박상혁 • 서동용 • 신정훈

어기구・윤후덕・이병훈

임종성 • 전재수 • 정춘숙

정필모 · 허종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1년 12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토지 양수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비농업인일 경우불법적인 농지임대차나 직불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2021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양도세 면제요건인 3년 경작에 대한 일몰규정도 코로나1 9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 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

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를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 농업인
-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 3.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경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양수 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	득세의 감면) ①
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	
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	
다)에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u>2024년 12월 31일</u>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u>토지의 양도로 인</u>	<u>토지를 다음 각</u>
<u>하여</u>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게 양도함으로써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전업농업인
-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

 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

 농어업인
- 3.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자경을 하기 위하여 토지

 를 양수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촌공사 또는 농업법인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